

진전 사항: 케이맨제도 수익 소유권 제도 변경 시행

한국어 번역본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영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영어 버전이 우선합니다.

소개

케이맨제도의 새로운 수익 소유권 제도(Beneficial Ownership Regime, BOR)가 7월 3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다만, 케이맨제도 금융 서비스 및 상무부(이하 “부처”)에서는 2025년 1월 1일까지는 새롭게 요구된 사항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수천 개 법인이 처음으로 BOR 적용 대상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미 등재된 법인의 경우 신규 규정에 따른 보고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새 제도를 위반하는 법인은 중대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경

2023년 11월 24일, 케이맨제도 의회는 2023년 수익 소유권 투명성법 (Beneficial Ownership Transparency Act) 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이하 “법안”)은 이후 2023년 12월 15일부로 고시되었습니다.

2023년 수익 소유권 투명성법, 2024년 (개시) 명령에 더하여 해당 법안은 2024년 7월 31일에 발효되었으나, 부처에서는 2025년 1월 1일까지는 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범위에 속하는 모든 법인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케이맨제도에서 이전에 적용된 수익 소유권 제도(이하 “이전 BOR”)는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부처에서는 추가적인 통보가 있을 때까지 수익 소유권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을 유예하여 모든 대상 법인이 신규 제도에 대비할 시간을 가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전 BOR에 몇 가지 변경사항을 도입했으며, 여기에는 규제 대상 투자 펀드 등에 대한 몇몇 규정 준수를 위한 대체 경로도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사의 이전 고객 업데이트에서 요약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¹.

케이맨제도 정부는 7월 31일부로 수익 소유권 투명성 규정(2024)(이하 “규정”)을 통과시켰으며 부처에서 조만간 수익 소유권 투명성 지침(이하 “지침”)의 최종 버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해당 규정과 지침은 모두 법안에 동반되는 사항으로서, 새로운 제도를 업계 관계자와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상세 정보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인 고객에게 새 제도가 고객(및 고객이 담당하는 모든 법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2025년 1월 1일까지 규정 준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곧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¹ <https://maples.com/en/knowledge-centre/2024/03/cayman-islands-update-upcoming-fundamental-changes-to-beneficial-ownership-regime>

규정의 주요 내용 요약

이 규정은 법안에서 제안하는 변경 사항의 주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일 대기 중 상태

이전 BOR 체계에서는 기업 서비스 제공자가 법인의 수익 소유권 등록부에 '질의 대기 중' 또는 '확인 대기 중' 상태를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는 법인의 상태(적용 대상 또는 면제)나 수익 소유자의 신원을 파악 중인 경우에 사용되었고, 후자는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인 수익 소유자에 대한 특정 필수 세부 정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상태가 하나의 '대기 중' 상태로 병합되었으며, 신규 규정에 따르면 이 상태는 다음 중 한 가지를 표시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 (a) 해당 법인이 등록 가능한 수익 소유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절차를 진행 중임 또는
- (b) 해당 법인이 등록 가능한 수익 소유자를 파악했으나, 해당 수익 소유자에 관한 모든 특정 필수 세부 정보가 아직 확인되거나 입증되지는 않음.

복수 국적

이전 고객 업데이트에 명시한 바와 같이, 법인의 수익 소유권 등록부에 보고해야 하는 특정 필수 세부 정보는(해당 법인이 '규정 준수를 위한 대체 경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 이전 BOR에 따른 요구 사항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주목할 만한 예외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법인이 (1) 모든 '수익 소유자'의 국적과 (2) 개인이나 '보고 대상 법인'이 법인의 관리권을 소유 또는 집행하는 성격에 대한 상세 정보도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익 소유자의 국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익 소유자의 국적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규정은 법인의 수익 소유권 등록부에 국적을

하나만 보고하면 된다고 명시하지만, 해당 수익 소유자 개인은 추가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단, 해당 추가 국적을 기재할 의무는 없음).

보고된 국적은 법인의 케이맨제도 기업 서비스 제공자가 진행하는 고객 확인 인증 절차 중에 사용하는 국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과태료

이 규정에서는 이 법안이나 규정의 산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과태료 부과 및 이의 제기를 위한 절차상의 단계에 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간접적 지분 보유

이 규정은 다른 법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이 법안에 따라 수익 소유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칙을 훨씬 명확하게 규명해 줍니다.

간접적 소유자 중 등록 가능한 수익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는 '과반수 지분'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따라서 중간 지주 기구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등록 가능한 대상이 아님). 해당 개념은 이전 BOR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향후 특정 사실 관계에 기반해서 세심한 분석을 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소유권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후속 조치

이전 BOR 적용 대상이었던 법인은 새 법안이 발효된 이 시점에도 수익 소유권 보고 요구 사항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은 새 제도에 따라 기존 수익 소유권 분석을 검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법인은 새 법안이 적용될 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전 BOR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법인(예: 면제 대상인 유한 파트너십, 유한 파트너십 및 재단 업체)과 이전에 면제 혜택을 받았던 법인의 경우, 이제 새 법안에 따른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정립할 것을 권장합니다.

규정 적용 대상인 모든 법인은 2025년 1월 1일까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등록된 투자 펀드 - 규정 준수를 위한 대체 경로(선택 사항)

사모펀드법 또는 뮤추얼펀드법에 따라 등록된 케이맨제도 투자 펀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 규정 준수를 위한 대체 경로 적용
- (b) 법안에 따라 수익 소유권 등록부를 구축하고 유지할 것인지 선택

다시 안내해 드리지만, 규제 대상인 케이맨제도 투자 펀드 중 대체 경로를 적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허가받은 펀드 관리자 또는 케이맨제도에 소재하며 규제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을 마친 다른 연락 담당자의 연락처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케이맨제도 등기소에서 요청 시 24시간 이내에(또는 요청에 기재된, 더 긴 기간 이내에) 수익 소유권 정보를 제공할 법인의 등록된 사무 서비스 제공자(이하 “연락 담당자”)가 있습니다.

Maples Group은 등록된 사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 펀드를 대신해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제도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기소의 수익 소유권 정보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투자 펀드를 지원할 체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신규 법안에 따라 규정 준수 요구 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적용 대상 법인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추가 지원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 조언이 필요한 경우, Maples Group의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맨제도

Christopher Capewell

+1 345 814 5666

chris.capewell@maples.com

Julian Ashworth

+1 345 814 5413

julian.ashworth@maples.com

Patrick Head

+1 345 814 5377

patrick.head@maples.com

Philip Dickinson

+1 345 814 5410

philip.dickinson@maples.com

Tim Dawson

+1 345 814 5525

tim.dawson@maples.com

Anthony Mourginos

+1 345 814 5155

anthony.mourginos@maples.com

두바이

Manuela Belmontes

+971 4 360 4074

manuela.belmontes@maples.com

홍콩

Derrick Kan

+852 9384 9006

derrick.kan@maples.com

런던

Heidi de Vries

+44 20 7466 1651

heidi.devries@maples.com

싱가포르

Michael Gagie

+65 9723 9872

michael.gagie@maples.com

2024년 8월

© MAPLES GROUP

이 업데이트는 Maples Group의 고객 및 전문 담당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포괄적이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